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주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창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부속시설의 냉·난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냉·난방	대강당	1시간	30,000
	소강당	1시간	10,000

별표1 중 부속시설의 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명	대강당	1시간	20,000
	소강당	1시간	5,000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사용료(제7조 관련)</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h>시 설 명</th> <th>단 위</th> <th>사용료</th> <th>사 용 기 준</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 시설</td> <td>대강당</td> <td rowspan="2">3시간 이내</td> <td>130,000</td> <td rowspan="5">                     1. 평일 주간(월요일~금요일)을 기준액으로 함                      2. 평일 야간은 기준액의 10%를 가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주간은 기준액의 20%를 야간은 30%를 가산함.                      3. 초과 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당해사용료 30%                      - 1시간 이상 3시간이내 : 기준사용료 전액 (무대설치 및 공연연습 시 50% 감액)                 </td> </tr> <tr> <td>소강당</td> <td>60,000</td> </tr> <tr> <td rowspan="4">부속 시설</td> <td>냉·난방</td> <td>1시간</td> <td>20,000</td> </tr> <tr> <td>조 명</td> <td>1시간</td> <td>20,000</td> </tr> <tr> <td>방 송</td> <td>1회</td> <td>10,000</td> </tr> <tr> <td>피아노</td> <td>1회</td> <td>10,000</td> </tr> <tr> <td>프로젝트</td> <td>1회</td> <td>20,000</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 구민회관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b></p>					시 설 명	단 위	사용료	사 용 기 준	비 고	기본 시설	대강당	3시간 이내	130,000	1. 평일 주간(월요일~금요일)을 기준액으로 함 2. 평일 야간은 기준액의 10%를 가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주간은 기준액의 20%를 야간은 30%를 가산함. 3. 초과 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당해사용료 30% - 1시간 이상 3시간이내 : 기준사용료 전액 (무대설치 및 공연연습 시 50% 감액)	소강당	60,000	부속 시설	냉·난방	1시간	20,000	조 명	1시간	20,000	방 송	1회	10,000	피아노	1회	10,000	프로젝트	1회	20,000		<p><b>【별표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사용료(제7조 관련)</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h>시 설 명</th> <th>단 위</th> <th>사용료</th> <th>사 용 기 준</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시설</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7">부속 시설</td> <td rowspan="2">냉·난방</td> <td>대강당</td> <td>1시간</td> <td>30,000</td>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소강당</td> <td>1시간</td> <td>10,000</td> </tr> <tr> <td rowspan="2">조 명</td> <td>대강당</td> <td>1시간</td> <td>20,000</td> </tr> <tr> <td>소강당</td> <td>1시간</td> <td>5,000</td> </tr> <tr> <td>방 송</td> <td>-</td> <td>1회</td> <td>10,000</td> </tr> <tr> <td>피아노</td> <td>-</td> <td>1회</td> <td>10,000</td> </tr> <tr> <td>범프로젝트</td> <td>-</td> <td>1회</td> <td>20,0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 구민회관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b></p>					시 설 명	단 위	사용료	사 용 기 준	비 고	기본 시설	(현행과 같음)				부속 시설	냉·난방	대강당	1시간	30,000	(현행과 같음)	소강당	1시간	10,000	조 명	대강당	1시간	20,000	소강당	1시간	5,000	방 송	-	1회	10,000	피아노	-	1회	10,000	범프로젝트	-	1회	20,000
시 설 명	단 위	사용료	사 용 기 준	비 고																																																																								
기본 시설	대강당	3시간 이내	130,000	1. 평일 주간(월요일~금요일)을 기준액으로 함 2. 평일 야간은 기준액의 10%를 가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주간은 기준액의 20%를 야간은 30%를 가산함. 3. 초과 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당해사용료 30% - 1시간 이상 3시간이내 : 기준사용료 전액 (무대설치 및 공연연습 시 50% 감액)																																																																								
	소강당		60,000																																																																									
부속 시설	냉·난방	1시간	20,000																																																																									
	조 명	1시간	20,000																																																																									
	방 송	1회	10,000																																																																									
	피아노	1회	10,000																																																																									
프로젝트	1회	20,000																																																																										
시 설 명	단 위	사용료	사 용 기 준	비 고																																																																								
기본 시설	(현행과 같음)																																																																											
부속 시설	냉·난방	대강당	1시간	30,000	(현행과 같음)																																																																							
		소강당	1시간	10,000																																																																								
	조 명	대강당	1시간	20,000																																																																								
		소강당	1시간	5,000																																																																								
	방 송	-	1회	10,000																																																																								
	피아노	-	1회	10,000																																																																								
	범프로젝트	-	1회	20,000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구민들의 여가충족 및 종합복지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조성된 구민회관의 사용료를 대강당과 소강당의 규모와 전력소모에 맞도록 조정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원가기반의 사용료 산출을 통해 구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으로 거듭나고자 함.

### 2. 주요내용

구민회관 사용료 중 냉·난방과 조명 사용료란 개정(별표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1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5개 부문’을 ‘7개 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부터 제7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예술체육상
7. 지역발전상

제4조 제6호 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예술체육상”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체육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7. “지역발전상”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내 교육·경제·의료·복지·환경·안전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제8조 제1항 중 ‘구민 30명 이상’을 ‘구민 10명 이상’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체육상 조례는 폐지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의 종류) 이 상은 5개 부문으로 한다.</p> <p>1. ~5.(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3조(상의 종류) ----- 7개 부문-----.</p> <p>1. ~5.(현행과 같음)</p> <p><u>6. 문화체육상</u></p> <p><u>7. 지역발전상</u></p>
<p>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5.(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4조(심사기준) -----.</p> <p>1. ~5.(현행과 같음)</p> <p><u>6. “문화예술체육상”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체육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u></p> <p><u>7. “지역발전상”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내 교육·경제·의료·복지·환경·안전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u></p>
<p>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구의회 의원, 학교장, 관할 동장 또는 만 20세 이상의 <u>구민 30명 이상</u>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p> <p>-----</p> <p>-----</p> <p>-----</p> <p>----- <u>구민 10명 이상</u>-----</p> <p>-----.</p> <p>② (현행과 같음)</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중구 구민상의 종류를 다양성이 존중받는 현 시대상황에 맞게 확대하고 구민 공동추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구민상에 대한 전 구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3조(상의 종류) 개정

- “문화예술체육상” 과 “지역발전상” 을 신설하여 구민상의 종류를 5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제4조(심사기준) 개정

- 구민상 종류 신설에 따른 각각의 심사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다.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개정

- 구민의 서명에 의한 공동추천시 만 20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축소하여 공동추천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1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를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을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이사장”을 “임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58조제7항”을 “법 제58조제8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체육센터(무학봉체육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회현체육센터,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문화체육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u>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u>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u>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u>		
제8조(임기) ① (생략) ② (생략) ③ <u>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이사) ① (생략)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u>이사장을 포함한 상임 이사의 정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u> 으로 한다.		제10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 <u>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u> 으로 한다.		
제21조(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①~④ (생략)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u>이사장</u> 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1조(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u>임원</u> 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현행	개정안
<p>제2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u>행정안전부장관</u>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2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 -----<u>제58조제8항</u>----- ----- ----- ----- <u>행정자치부장관</u>----- ----- ----- ----- ----- ----- ----- ----- -----.</p>
<p>제24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u>에 관한 사업</li> <li>2. <u>문화체육센터(무학봉체육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회현동체육센터, 충무아트홀스포츠클럽센터) 관리 및 운영</u>에 관한 사업</li> <li>3.~4. (생략)</li> </ol>	<p>제24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u>에 관한 사업</li> <li>2. <u>문화체육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u>에 관한 사업</li> <li>3.~4. (현행과 같음)</li> </ol>
<p>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3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u>제24조</u>----- ----- ----- ----- -----.</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상위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법 및 구 실정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규정에 저촉되는 항목 정비

- 제7조(임원) :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이사의 비율이 상위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 제8조(임기) :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궐 취임 임원의 임기제한 규정 삭제
- 제10조(이사) :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문구 삭제

나. 상위법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 정비

- 제2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 2015. 12. 15.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2014. 11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 반영

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제24조(사업) : 공단의 정관에 위탁관리하는 시설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는 세부 시설명은 제외하고 포괄적인 내용만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라. 용어 및 오탈자 정비 : 제21조5항, 제2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의거 제외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내 소상공인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상생협력상가협의체

- 제7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4. 기타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 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제11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청장은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경제과장
2. 관련 부서장
3.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5.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경제과 시장경제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안 제5조)

나.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안 제6조)

다.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라.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15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이 동장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중구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9조)
- 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다.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등록면허세

#####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

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장 재산세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안 제6조)

다.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세에 대한 납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17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제1조(「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며,  
제88조의1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생 략)</p> <p>④ 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⑤·⑦ (생 략)</p>	<p>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p> <p>⑤·⑦ (현행과 같음)</p>
<p>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생 략) 1.~2. (생략)</p> <p>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4.~8.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4.~8.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8조의1(변상금의 징수유예) (생 략) 1.~2. (생 략)</p> <p>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p> <p>4. (생 략)</p>	<p>제88조의1(변상금의 징수유예)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p> <p>4.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생략)</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p> <p>2.~4. (생략)</p> <p>② (생략)</p>	<p>제38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p> <p>2.~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① “저소득 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서 정하고 있는 <u>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u>를 말한다.</p> <p>② (생략)</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p> <p>제2조 (정의) ① “저소득 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행2015.7.1.)으로 인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통합급여)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개별급여로 보장별 기준이 세분화되어 대상자 명칭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2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일괄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재무과
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청소행정과
3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 □ 개정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개별급여 대상자 보장기준이 세분화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1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4조 중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를  
“판매이윤을 제외하고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로 한다.

제37조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삭제>
제3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 ----- <u>해당 폐기물</u> <u>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u> <u>한다.</u>	제3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 ----- <u>판매이윤</u> <u>을 제외하고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u>
제37조(가산금 등) ① ----- ----- <u>100분의 5</u> ----- -----	제37조(가산금 등) ① ----- ----- <u>100분의 3</u>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종량제 수수료를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제15조), 예산총계주의(제34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 나. 규제완화차원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조항 개정 및 삭제

###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 수수료 구세입처리 (안 제34조)
- 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변경된 조항 개정·삭제
  - 1) 과태료 부과 근거 없는 조항 삭제 (안 제28조)
  - 2) 종량제봉투대금 등 체납시 가산금 요율 조정 (안 제37조)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1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1(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종량제 수수료를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제15조), 예산총계주의(제34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구세입처리 (안 제9조의1 신설)

- 종량제 수수료를 대행업체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6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는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품등을 받은”을 “금품 등을 받거나 제15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1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2부터 별지8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별표]

##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구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300	230	120	<u>원고료</u> <u>포함</u>
1시간 초과	2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지2>

■ [별지 제1호서식]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

■ [별지 제2호서식]

###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input type="checkbox"/> 회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input type="checkbox"/>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소

일 시	20 . . . . ~ 20 .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_____만원 (※ 1회 평균 대가 _____만원) (교통비 _____만원, 원고료 _____만원, 재료비 _____만원 포함)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4>

■ [별지 3호서식]

##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5>

■ [별지 제4호서식]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b>60일</b>
------	------	------	------	------------

신고자	성명 <span style="margin-left: 150px;">(서명 또는 인)</span>	생년월일 <span style="margin-left: 10px;">(외국인등록번호)</span>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span style="margin-left: 10px;">(직급)</span>
	소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신고 내용

증빙자료 목록	※ 증빙자료 첨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6>

■ [별지 제5호서식]

###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8>

■ [별지 제7호서식]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행동강령책임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p> <p>① (생략)</p> <p>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삭제(2009.2.25.)</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u>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⑤ <u>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는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p>
<p>제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p> <p>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제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p> <p>① ----- -----<u>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u> ----- ----- ----- -----.</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 가. 공무원의 외부강의 신고시 강의료를 원고료 등으로 우회하여 수수하거나, 과도한 출강 또는 강의 등이 특정기관·특정인에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 나. 합리적인 외부강의 대가기준(원고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 포함 (안 제15조 제2항, 별표)
- 나.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안 제15조 제4항)
  - 1)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3회·6시간으로 제한
- 다. 외부강의·회의 등의 관리체계 강화 (안 제15조 제5항)
  - 1)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기관장 보고 (반기별)
  - 2)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 징계조치 우선 고려
- 라.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 의무화 (안 제21조 제1항)
- 마. 별지 서식 변경

서울특별시 증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65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 주기**  
(제3조 관련)

구 분	감 사 주 기
구 본청 및 보건소 공단,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2년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3년
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	필요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b>【별표】</b>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 주기                      (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사주기</th> </tr> </thead> <tbody> <tr> <td>구 본청 및 보건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td> </tr> <tr> <td>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b>공단,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b></td> <td style="text-align: center;"><b>3년</b></td> </tr> <tr> <td>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요시</td> </tr> </tbody> </table>	구 분	감사주기	구 본청 및 보건소	2년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b>공단,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b>	<b>3년</b>	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	필요시	<p><b>【별표】</b>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 주기                      (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사주기</th> </tr> </thead> <tbody> <tr> <td>구 본청 및 보건소 <b>공단,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b></td> <td style="text-align: center;"><b>2년</b></td> </tr> <tr> <td>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3년</td> </tr> <tr> <td>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요시</td> </tr> </tbody> </table>	구 분	감사주기	구 본청 및 보건소 <b>공단,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b>	<b>2년</b>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3년	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	필요시
구 분	감사주기																
구 본청 및 보건소	2년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b>공단,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b>	<b>3년</b>																
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	필요시																
구 분	감사주기																
구 본청 및 보건소 <b>공단,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b>	<b>2년</b>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3년																
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	필요시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및 중구 문화재단의 감사주기를 단축하여 부패·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별표】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 주기” 중 공단, 출자 또는 출연 기관의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6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슈퍼마켓·편의점” 를 “슈퍼마켓·편의점 등” 으로 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고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 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 등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 본문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외에” 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6조 본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

상으로 공개 추천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고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② (생략)</p> <p>1. ~ 5. (생략)</p> <p>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u>슈퍼마켓·편의점</u>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p> <p>③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②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u>슈퍼마켓·편의점 등</u>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p> <p>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 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p>
<p>제5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u>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 외에</u>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야간에 주로 이용하거나 영업시간</u></p>	<p>제5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u>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u> <u>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신 설>

<삭 제>

- 3.

-----  
-----  
-----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삭 제>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  
정한다.

2. (현행과 같음)

3. 공고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 가.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소매인의 지정기준 내용을 명확히함
- 나.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중 애매하여 적용하기 힘든 조항을 삭제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타업종과의 분리기준 완화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영업허가(신고 포함)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개혁
- 다. 폐업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기간이 현행 14일 이상으로 소매인 지정되는데 소요기간이 다소 길어 소규모 영세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므로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공고장소 명시 필요성

### 2. 주요내용

- 가.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소매인의 지정기준 내용을 명확히함
  - 1) 매장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제2항 제6호)
  - 2) 매장면적 측정방법 명시(안 제3조 제5항)
- 나.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중 일부 조항 삭제
  - 1) 야간에 주로 이용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조항 삭제(안 제5조)
  - 2) 식품위생법에 영업허가(신고 포함)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조항 삭제(안 제5조)
- 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단축 및 공고장소 명시
  - 1)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안 제6조 제1항)
  - 2) 공고장소를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명시(안 제6조 제3항)